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정관

제정 1998년 2월 25일

- 개정 1998년 3월 31일
 - 2000년 12월 15일
 - 2003년 2월 14일
 - 2004년 4월 14일
 - 2004년 5월 11일
 - 2005년 3월 14일
 - 2006년 3월 27일
 - 2007년 2월 23일
 - 2007년 4월 01일
 - 2008년 3월 10일
 - 2009년 3월 17일
 - 2012년 3월 19일
 - 2013년 3월 22일
 - 2013년 9월 11일
 - 2015년 3월 27일
 - 2016년 3월 25일
 - 2018년 3월 28일
 - 2019년 3월 27일
 - 2020년 3월 25일
 - 2021년 3월 29일
 - 2022년 3월 28일

LIG 넥스원

제1장 총칙

제 1 조(상호)

이 회사는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(LIG 넥스원 주식회사)라 하고 영문으로는 LIG Nex1 Co., Ltd.로 한다.

제 2 조(목적)

-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1. 전자, 전기, 통신, 정보통신, 광학, 음향과 기타 기계기구 및 관련부품의 제조, 가공조립, 재생, 정비, 개량 및 판매업
- 2. 발사체, 항공기, 우주비행체와 관련 전기, 전자, 화약, 엔진, 기계류 및 소재류(복합재료, 유·무기재료, 금속제품 등)의 제조, 가공, 조립, 재생, 개조, 정비, 개량 및 판매 (개정 2015. 3. 27.)
- 3. 선박 및 함정용 통신, 전자, 전기, 기계, 장비의 제조, 판매업
- 4. 전자 및 전기계측기기의 제조, 교정, 검사 및 판매업
- 5. 전자 상거래 및 인터넷사업, 동사업 관련기기, 부품의 제조, 판매업 및 서비스업
- 6. 금형의 제조 및 판매업
- 7. 정보통신 분야 시스템체계종합 및 시설공사업
- 8. 전자, 네트워크 관련 기기 및 동 부품, 소자의 제조, 판매 및 운영업
- 9. 자동차용 전자, 전기, 기계장비의 제조, 판매업
- 10. 주택사업 및 부동산업(매매, 분양, 임대, 개발, 중개 등)
- 11. 엔지니어링업 (신설 2012. 3. 19.)
- 12. 전기공사업 (신설 2013. 3. 22.)
- 13. 기계설비공사업 (신설 2013. 3. 22.)

- 14. 산업용기계 및 장비임대업 (신설 2013. 3. 22.)
- 15.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, 판매 및 공급업 (신설 2015. 3. 22.)
- 16. 전 각항에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용역 수탁업
- 17. 전 각항의 제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, 판매 및 운영업
- 18. 전 각항에 관련된 제품과 기술의 수출입업, 국내외 용역도급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
- 19.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(신설 2022.03.28)
- 20.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(신설 2022.03.28)
- 21. 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

제 3 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

-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.
-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영업소, 공장 및 현지법인을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다.

제 4 조(공고방법)

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lignex1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 (개정 2015. 3. 27.)

제2장 주식

제 5 조(발행예정 주식의 총수)
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.

제 6 조(일주의 금액)

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(주식의 종류)

-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한다. (개정 2015. 3. 27.)(개정 2019. 3. 27.)
- ② (삭제 2019. 3. 27.)

제 7 조의 2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(신설 2019. 3. 27.)

제 8 조(무의결권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

-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일천만주로 한다. (개정 2015. 3. 27.) (개정 2019. 3. 27)
-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%이상으로 하고, 발행시에 이사회가 그 율을 정한다.
-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-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-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-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.
- ⑦ 이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

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. (개정 2013. 3. 22) (개정 2019. 3. 27) (개정 2021. 3. 29)

제 9 조(주식의 발행 및 배정)

-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
 - 1.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- 2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3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
 - 1.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
 - 2.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- 3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
- 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제 1 호, 제 2 호, 제 2 호의 2,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
- ④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⑤ 이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(개정 2019. 3. 27)
- ⑥ 이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(개정 2019. 3. 27)
- ⑦ 이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
(개정 2015. 3. 27.) (개정 2019. 3. 27)

제 10 조(동등 배당)

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 (개정 2021. 3. 29)

제 11 조(명의개서대리인)

-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 (개정 2019. 3. 27)
-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-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. (신설 2015. 3. 27.)(개정 2019. 3. 27.)
-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. (신설 2015. 3. 27.) (개정 2021. 3. 29)

제 12 조(삭제)

(삭제 2019. 3. 27.)

제 13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
-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 (개정 2015. 3. 27.)
-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주식매수선택권)

① 이 회사는 상법 제 340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·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

-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,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·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- 1.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
 - 2.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
 - 3. 위 각 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
-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-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·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·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(개정 2015. 3. 27.)
 - 1.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
 - 2.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주식의 실질가액
-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. (개정 2015. 3. 27.)
-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.

(개정 2015. 3. 27.)

- ⑧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당해 임·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
 - 2. 당해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
 - 3. 당해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 -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를 준용한다.

제3장 사채

제 15 조(사채의 발행)

-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 (신설 2013. 3. 22.)

제 16 조(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)

-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-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9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
 - 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
 - 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- 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 (개정 2015, 3, 27.) (개정 2021, 3, 29)

제 17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

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-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9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
 - 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
 - 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- 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⑥ (삭제 2021. 3. 29)

제 17 조의 2(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(개정 2019. 3. 27.) (개정 2021. 3. 29)

제 17 조의 3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

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(신설 2019. 3. 27.)

제 4 장 주주총회

제 18 조(소집시기)

-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 19 조(소집권자)

-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0 조(소집통지 및 공고)

-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 (신설 2015. 3. 27.)

제 21 조(소집지)

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지점 등의 소재지에서 개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 (개정 2015, 3, 27.)

제 22 조(의장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장을 선임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3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.

제 23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, 행동을 하는 등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있다.
-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또는 발언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. (개정 2019, 3, 27.)

제 23 조의 2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

이 회사,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 (신설 2015. 3. 27.)

제 23 조의 3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
-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한다.
-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신설 2015. 3. 27.) (개정 2019. 3. 27)

제 24 조(주주의 의결권)

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
제 25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6 조(주주총회의 의결방법)
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의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 27 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5 장 이사, 이사회

제 28 조(이사의 수)

-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7 인 이내로 하며, 법령이 정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. (개정 2018. 3. 28.)(개정 2019. 3. 27.)
- ②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 (신설 2019. 3. 27.)

제 29 조(이사의 선임)
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 전 항에 의한 이사의 선임시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0 조(이사의 임기)

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.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 (개정 2018. 3. 28.)

제 31 조(이사의 보선)

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32 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

-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영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. (개정 2020.3.25)
- ②이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 (개정 2020.3.25)

제 33 조(이사의 직무)

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 선임된 경우에는 각자 이 회사를 대표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각 대표이사 별로 분담할 담당업무를 정할 수 있다.

② 경영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,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사내이사 중 상위직책자, 기타비상무이사 중 연장자, 사외이사 중 연장자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20. 3. 25.)

제 33 조의 2(이사의 보고의무)

-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(신설 2015. 3. 27.)

제 33 조의 3(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)

-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①항의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- 1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
- 2. 안전·보건관리 조직의 구성·인원 및 역할
- 3. 안전·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
- 4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
- 5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(신설 2020. 3. 25.)

제 34 조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

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상법 제 397 조(경업금지), 제 397 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, 제 398 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신설 2013, 3, 22.)

제 35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 (개정 2019. 3. 27)
-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 영업일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(개정 2013. 3. 22.)
-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 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.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6 조(위원회의 설치)

-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1. 감사위원회
 - 2.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(개정 2019. 3. 27.)
 - 3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(신설 2019.03.27.)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5 조, 제 37 조,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(개정 2015.3.27.)

제 37 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 (개정 2015. 3. 27.)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(개정 2015, 3, 27.)

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38 조(이사회의 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39 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

- ① 이사의 보수(제 2 항에 따른 퇴직금 제외)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 (개정 2019, 3, 27)
- ②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. (개정 2015. 3. 27.)

제 40 조(경영임원)

-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경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. (개정 2013. 3. 22.)

제 6 장 감사위원회 (신설 2013. 3. 22.)

제 41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제 542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④ 이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.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한다. (개정 2021. 3. 29)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(개정 2021. 3. 29)
-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 (개정 2015. 3. 27.)
- ⑦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 (신설 2019. 3. 27.)
- ⑧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 (신설 2021, 3, 29)
-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(신설 2021. 3. 29)

제 42 조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

-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 (개정 2019. 3. 27.)
-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⑧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.
-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- ⑩ 감사위원회의 기타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43 조(감사록)

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7 장 계산

제 44 조(사업연도)

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45 조(재무제표의 작성)

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감사위원회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 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대차대조표
- 2. 손익계산서
- 3.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상법 제 447 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- ③ (삭제 2015.03.27.)
- ④ 제 2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사에 5 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⑦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 (신설 2015. 3. 27.)

제 46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

이 회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(개정 2015. 3. 27.)(개정 2019. 3. 27.)

제 47 조(이익금의 처분)

-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 (개정 2019. 3. 27)
 - 1. 이익준비금(상법상의 이익준비금)
 - 2. 기타의 법정적립금
 - 3. 배당금
 - 4. 임의적립금
 - 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
제 48 조(이익의 배당)

-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사업연도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 (신설 2021. 3. 29)

제 49 조(중간배당)

- ① 이 회사는 영업연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. (개정 2015. 3. 27.)
-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(삭제 2021. 3. 29)
- ④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 - 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

- 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- 3.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
- 4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
- 5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
- 6.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(신설 2015. 3. 27.)

제 50 조(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
-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-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.

(신설 2013. 3. 22.)

부 칙

제 1 조(적용범위)
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.

제 2 조(사규)

-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경영상 필요한 사규를 정할 수 있다. 제 3 조(시행일)
- 이 정관은 200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6 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제 17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7 조, 제 7 조의 2, 제 11 조, 제 12 조, 제 17 조의 2 및 제 17 조의 3 개정내용은 「주식.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